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시키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방문·우편·전화·FAX·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고,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 나.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포상금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6조).
- 다.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등은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신고·포상 담당공무원은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III. 검토의견

1.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 제정 배경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는 시민의식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주민들의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거나 신고활동이 미흡한 상태에 있으므로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주민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2003. 1. 환경부의 2003년도 환경오염 등 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 시달 및 2003. 10. 13 서울시로부터 조례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동 내용을 참고하여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2004. 6. 22.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동조례를 제정한 구는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구 4개구가 되겠으며, 또한 이 조례제정안은 (안 제2조) 적용범위를 포함한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동 제정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포상(안 제6조)

안 제6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1) 2004. 1. 환경부의 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등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예산(지방비)을 확보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되, 다만, 환경사범(징역형, 벌금형)을 신고한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의뢰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자체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향후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증가로 인한 구 재정부담 등을 비추어 보면 적절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다음과 같이 1개조를 신설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0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안제6조제2항에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바, 별표중 2호의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에 지급액을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최고 50만원은 환경사범의 경우 고발 병행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경부의 2004년도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동 지침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별표중 4호 나목에서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모니터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 참석자 등에게 5,000원 상당의 현금·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동규정은 2004. 1. 환경부의 지침에 의하면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참석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2조의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및 타 사회단체 봉사활동시 형평성 문제를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동규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례 내용은 관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개월 정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IV.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상금)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상금의 지급)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그 최고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제6조 제2항 관련)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구	분	포 상 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20만원

4.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하는 포상금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현지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나.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모니터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 참석자 등에게 5,000원 상당의 현금·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 및 행정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부과대상 및 행정처분 사항을 적용한다.